



제 418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9호)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 제안경위

1. 김종양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4. 09. 06.

다. 회부연월일 : 2024. 09. 09.

2. 이상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4. 09. 13.

다. 회부연월일 : 2024. 09. 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종양의원안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2. 이상식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조약·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 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경찰청이 국제공조업무 범죄예방대응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김종양의원안	이상식의원안
제8조의3(국제협력) (생략)	제8조의3(국제협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8조의3(국제협력)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자료 교환 중 국제공 조 또는 범죄의 예방 · 대응에 필요한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 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의4(개인 정보의 국외이전) ① 경찰청 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제8조의3에 따 른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u><신 설></u>		<u>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¹⁾.

이에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초국경 범죄 대응,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대테러 업무와 범죄예방 등 국제공조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

1) 「개인정보보호법」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 3. 14.>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② ~ ⑥ (생략)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국
외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
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
로 이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안보 및 범죄 예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제한 가능성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을 위해 국외 이전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